

#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0,245,018	9,007,351
일반회계	223,378,992	6,701,370
특별회계	76,866,026	2,305,981
공기업특별회계	7,211,431	216,343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211,431	216,343
기타특별회계	69,654,595	2,089,63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773,200	293,19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5,990	17,880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64,026	31,921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2,322,642	669,67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561,274	316,83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615,621	288,469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127,834	63,83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3,174,869	395,246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97,239	11,917
기반시설특별회계	21,900	65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56,59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